

 국토교통부		보 도 자 료		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보다 나은 정부 
		배포일시	2020. 1. 20(월) 총 3매(본문2)	
담당 부서	자동차운영 보험과	담당자	•과장 이중기, 사무관 노경우, 주무관 이선학 •☎ (044) 201-3858, 3859	
보 도 일 시		2020년 1월 21일(화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.21(화) 10:00 이후 보도 가능		

폐차장에 들어간 내 차, 검사지연 과태료 ‘면제’

-29일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공포…폐차장 입고기간 과태료 산정일수서 제외
-국토부, 폐차장 입고기간 중 검사기간 도래 전 연장유예 신청토록 주의 당부

□ 앞으로는 폐차장에 들어가 운행을 하지 않는 자동차의 검사 기간이 경과되더라도 폐차장에 있던 기간은 과태료 산정일수에서 제외된다.

○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폐차 등의 사유로 자동차검사기간이 연장되거나 검사가 유예된 경우에는 자동차검사 지연일수에서 연장 또는 유예된 기간을 제외함으로써 과태료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「자동차관리법 시행령」이 개정 공포(1.29)될 예정이라고 밝혔다.

□ 종전에는 자동차가 폐차를 위해 폐차장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정기검사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가 말소등록될 때까지의 기간을 계산하여 검사 지연일수만큼 과태료*를 부과하였다.

* 최대 30만 원(30일 이내: 2만 원, 31일~114일: 2만 원+1만 원/3일, 115일 이상: 30만 원)

○ 이는 폐차를 증명하는 서류인 폐차인수증명서가 발급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자동차를 폐차장에서 반출하여 운행할 수 있고 폐차인수 증명서에는 폐차장에 들어간 날짜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, 과태료 부과관청인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해당 자동차가 폐차장에 들어가 실제 운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었다.

- 국토교통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지난 12월 9일자로 「자동차등록규칙」을 개정하여 폐차업자(해체재활용업자)가 폐차인수증명서에 자동차 입고일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였고,
 - 폐차인수증명서를 근거로 해당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폐차장에 들어가 실제 운행하지 않은 기간 동안은 자동차검사기간을 연장해 주거나 검사를 유예해 줌으로써 그 기간을 제외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.
-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폐차장에 들어가 폐차 시까지 장기간(약 4주~8주) 소요되는 경유자동차 조기폐차의 경우에도 과태료 면제가 가능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면서,
- 다만, 자동차가 폐차장에 들어간 경우에도 자동차 검사기간이 도래할 경우 자동차검사기간을 연장 신청하거나 자동차검사의 유예를 신청하여야 과태료 면제가 가능하다는 주의를 당부하였다.

붙임 「자동차관리법 시행령」 개정 내용. 끝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자동차 운영보험과 노경우 사무관(☎ 044-201-3858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현행	개정
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(제20조 관련) 1. 일반기준 가.~다. (생략) < 신설 > 라.~마. (생략) 2. 개별기준 (생략)	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(제20조 관련) 1. 일반기준 가.~다. (현행과 같음) 라. 제2호허목에 따른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<u>검사기간 도래 후에 자동차 폐차 등의 사유로 「자동차관리법」 제43조제4항에 따라 검사기간이 연장되거나 검사가 유예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연장 또는 유예 받은 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은 검사 지연기간에서 제외한다.</u> 마.~바. (현행 라.~마.와 같음) 2. 개별기준 (현행과 같음)